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923호 2012.10.15.(월)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106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4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10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1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8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보조원 : 행정사무보조,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의료급여관리사, 전산프로그램입력, 보건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사무를 보조하며 일일근무시간 대부분을 내근 하는 인력을 말한다.

별표 1과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순노무원의 수행기능 분류표(제5조제1항 관련)

직 능 별	수 행 기 능 적 용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 (시설관리)	o 사진・비디오 촬영기사, 음향기기 유지관리 보조, 보일러(배관), 전기, 통신공(단, 정규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o 공원시설・묘지 관리 o 화단・화분・양묘・조경・가로수 관리 o 입장객 관리 o 배수장・취정수장・염전・종묘・현장체험시설・견학시설 관리 o 수영장・체육시설 관리 o 식당(취사) 관리 o 정규시간(공무원 근무시간)의 청사내・외 쓰레기 수거 및 청소업무 등 o **방범CCTV모니터 요원**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업종사)	o 시험 묘・포장사업 인부 o 인쇄・제본・발간 o 동물사육 등 사육관리보조 o 상수도 약품처리, 화공약품 투입 o 굴착작업, 준설, 누수수리 o 재활용 선별 o 농기계 수리 o 기동생활민원처리 o 수도점검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 (지도단속)	o 지도단속원 o 순찰감시원, 건널목 감시원 o 주차장 주차관리 o 산불감시(청원산림보호요원)
단순잡역조무인부 (단순조무)	o **비서실, 실・국장 부속실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내방 민원인 안내・접대 및 기자실 운영** o 문서전달수발・사환(기관전체의 문서수발을 말함) o 각종 자료실 정리 및 민원인 안내 (단, 정규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o 단순조사업무 처리 등

[별표 2]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수행기능별 내역	정 원	비 고
총 계			192	
단순노무원	계		22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인부 (시설관리)	소 계	11	
		청사환경정리인부	1	총무과
		문서마이크로편집요원	2	민원봉사과
		의원자료도서실정리요원	1	의회사무국
		녹지관리인부	3	녹지경관과
		펌프장관리원	1	재난관리과
		계측기관리원	1	건설과
		공영주차장관리원	1	교통행정과
		방범CCTV모니터링요원	1	기획홍보실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업종사)	소 계	5	
		재활용수집·선별원	2	청소행정과
		하수도 준설원	3	건설과
	현장지도단속·감시현장인부 (지도단속)	소 계	3	
		자동차배기가스단속원	1	환경보전과
		광고물철거인부	1	녹지경관과
		개발제한구역단속원	1	도시개발과
	단순잡역조무인부 (단순조무)	소 계	3	
		비서실, 부속실등 내방 민원 안내요원	3	총무과
행정보조원	계		5	
	자립지원직업상담사		1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관리사		1	사회복지과
	환경개선부담금체납정리요원		1	환경보전과
	건강생활실천사업		1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인부		1	보건소
도로보수원			5	건설과
환경미화원			139	청소행정과
청원경찰		계	21	
		경비청원경찰	20	총무과
		경비청원경찰	1	보건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106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자치법규의 일부문구를 법에 맞도록 변경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나.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3항, 제3조, 제6조)

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조건을 운영지침에 맞제 수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 10. 29(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 전화 560-4845, 팩스 560-27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10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안 제2조)

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안 제3조)

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 제4조)

마.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안 제5조)

바.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6조)

사.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7조)

아.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등 (안 제8조)

자.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등 (안 제9조)

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

카.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수당 등 (안 제11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안 제12조)

파.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 ☎560-4822, 팩스560-2786)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1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안 제2조)

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안 제3조)

라. 인천광역시 서구 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 제4조)

마.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안 제5조)

바.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6조)

사.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7조)

아.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간사 등 (안 제8조)

자. 군·구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등(안 제9조)

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

카.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수당 등 (안 제11조)

타.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록 (안 제12조)

파.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세칙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 ☎560-4822, 팩스560-2786)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